종합통장거래약관

- 제1조(약관의 적용) 종합통장(이하 "통장"이라 함)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거치식예금약관, 적립식예금약관, 자동이체약관 및 이 종합통장거래약 관을 적용한다.
- 제2조(통장의 구성) ①이 통장은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모체로 하고 정기 예금, 적금, 신용부금, 가계장기저축 등 거치식·적립식의 예금을 연결계좌로 하여 운용한다.
 - ②연결계좌인 정기예금·적금·신용부금·가계장기저축 등의 통장 및 증서는 이 통장으로 갈음한다.
 - ③연결거래의 명의와 거래인감은 모체계좌와 동일하여야 한다.
- **제3조(거래방법)** 거래처는 이 통장으로 모체계좌의 개별거래와 연결거래, 자동이체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각종 자동이체거래를 희망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과 따로 약정을 맺어야한다.
- 제4조(연결계좌의 자동전환 처리)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연결적립식예금의 만기일(만 기이연일, 이하 같음) 15일전에 자동전환처리승낙확인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만기일에 연결적금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으로 자동전환 처리한다.
- 제5조(대출) ①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일정한 대출자격조건을 갖춘 때에는 상호저축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라 대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,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호저축은행 과 별도의 약정을 하여야 한다.
 - ②거래처가 상호저축은행과 한도거래 대출약정을 한 때는 대출한도까지 이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며, 대출잔액이 있을 때는 모체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을 갚는데 충당한다.
 - ③한도거래 대출이자는 매월 1회 일정한 날(휴일인 경우 전영업일)에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이율과 방법으로 셈하여 다음 영업일에 모체계좌에서 빼거나 대출원금에 더한다.
- **제6조(해지)** ①거래처가 이 통장을 해지하고자 할 때 대출금 잔액이 있으면 이를 전부 상호 저축은행에 갚은 후에 해지하여야 한다.
 - ②거래처가 이 종합통장거래 해지 후에도 모체계좌 및 연결계좌의 개별거래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는 상호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장이나 증서를 발행하여 내어준다.